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3666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366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2467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정채광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민태호

변론 종결2020. 3. 27.

판결 선고2020. 4. 2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2467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1,950,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79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조정신청 당시 보유재산을 숨김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조정승인이 취소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동변제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채무감면 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가 채무조정승인 이전 채무를 변제한 것을 이유로 전액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채무조정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고지한 사실과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채무조정승인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만약 원고가 처음부터 보유재산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당초의 채무조정신청은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채무조정신청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미변제 보증채무액 합계가 61,735,34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조정신청 당시 원고가 밝히지 아니한 분양권(계약하남시 F아파트 G호)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원고가 납부한 입주금 합계액이 84,32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한 채무조정신청제도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금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따라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같은 채무조정승인 여부는 기금의 내부 규정과 그에 따른 심사결과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감면 여부 및 범위,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채무조정신청인의 재산상황,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채무조정신청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어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채무조정신청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은닉재산이 밝혀지기 이전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승인을 받은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이수진

판사박동복